

[일련번호 : 1]

경기도체육회

주의조치

[제 목] 회의체 구성 및 운영 부적정

[소 속 기 관] 시흥시체육회

[내 용]

1. 업무개요

시흥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지방체육회)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시흥시로부터 사무국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로부터 각종 사업비 등을 지원받아 시흥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해 활동하는 공공성을 지닌 법정법인단체이며 「시흥시체육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단체를 운영해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체육회는 「정관」 제4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임원을 선임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였고, 그 역할과 기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사회는 「정관」 제18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및 제23조(임원)에 따라 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제18조에서 정한 기능에 따라 부의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해야 한다. 그 의결에 관하여는 제19조(이사회 소집)에 의해 그 소집이 이루어지며, 제20조에서 정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의 규정에 따라 기산하고,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비로소 부의된 심의안건을

가결 처리하고 있다.

또한, 체육회 ‘총회’의 경우 정관 제12조(총회의 기능)에서 심의·의결사항을 각 호로 명시하고 있는데, 그 중 ‘정회원단체의 가입, 강등 및 제명’의 관한 사항을 그 기능에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회원단체의 ‘제명’에 관하여는 체육회 정관 제10조의2(회원종목단체의 강등·제명) 제1항 및 제2항¹⁾을 두어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에 대한 ‘제명’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고, 이는 제15조²⁾에서 정하고 있는 보통의 ‘총회’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비해 회원단체의 ‘제명’에 대한 의결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체육회는 이사회 운영과 회원단체에 대한 관리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견되었다.

가.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체육회는 정관 제23조(임원) 제1항에 회장, 부회장을 비롯한 이사의 정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항 2호에 따라 ‘부회장’의 경우 9명 이하의 정수를 지켜 구성하여야 함에도 현재 12명을 두어 규정에서 정한 정수보다 3명을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다.(시흥시체육회 20**년도 정기종합감사 자료)

-
- 1) 「시흥시체육회 정관」 제10조의2(회원종목단체의 강등·제명) ① 체육회의 정회원단체가 제8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체육회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강등 또는 제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체육회는 종목단체가 경기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회원인 경우 미리 이를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준회원단체와 인정단체가 제8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체육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강등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2) 제1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또한, 체육회는 정관 제20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기산하면서 실제 출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 ‘위임장’를 제출하게 하여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기산, 각종 부의안건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표1] 2021~2023년도 체육회 이사회 개최현황

연 도	차수	개최일자	재적임원*	의결수**	위임임원	실참석임원	비고
2021	제**차	‘21.**.**	**명	**명	**명	**명	
2022	제**차	‘22.**.**	**명	**명	**명	**명	
"	제**차	‘22.**.**	**명	**명	**명	**명	
"	제**차	‘22.**.**	**명	**명	**명	**명	
2023	제**차	‘23.**.**	**명	**명	**명	**명	
"	제**차	‘23.**.**	**명	**명	**명	**명	
"	제**차	‘23.**.**	**명	**명	**명	**명	
"	제**차	‘23.**.**	**명	**명	**명	**명	
"	제**차	‘23.**.**	**명	**명	**명	**명	

* 감사 제외

** 의사 및 의결수(위임자 포함)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심의안건을 다루었던 총 9건의 이사회중 [표1]과 같이 모든 차수에서 ‘위임’을 허용하였으며, 의사 및 의결정족수 기산시 포함시켜 심의사항을 의결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사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체육회 정관 제20조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여 정족수의 경우 출석한 자를 대상으로 기산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동 정관 제19조 제7항³⁾ 및 제22조⁴⁾에서는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가 가능하거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

3) 「시흥시체육회 정관」 제19조(이사회의 소집) ⑦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4) 「시흥시체육회 정관」 제22조(서면결의) 회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될 때 서면결의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또한 이사의 직위는 일신전속적이며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제3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⁵⁾의 태도인 점을 비추어 이사회에의 경우 이사의 위임을 통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정회원단체의 ‘제명’의결

체육회는 2022년도 대의원총회(“22.*.**”)를 개최하면서 ‘정회원단체의 제명의 건’을 안건으로 다루었으며, 당시 과거 정회원단체였으나, 2022년 관리단체로 운영중이던 ‘시흥시**협회’를 체육회 「가입 및 탈퇴」규정 제7조 제3항을 근거하여 제명을 의결하였다.

※ 당시 대의원총회는 재적대의원 57명중 **명(참석 **, 대리참석 **) 참석으로 성원되었으며, 해당 안건은 만장일치로 의결함.

관리단체에 대한 제명은 체육회 「가입 및 탈퇴 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간 지정해제가 되지 못한 경우, 해당 단체를 제명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제명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체육회 정관 10조의2 제1항에서는 정회원단체의 강등 또는 제명에 대하여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의 의결로 강등 또는 제명할 수 있다는 절차(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어 동 조항의 준용여부에 대하여 유권해석의 여지는 있다 할 것이나, 시흥시체조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되기 전 ‘정회원단체’였던 점, 정회원단체에 대한 제명 의결의 정족수는 총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와는 별도로 체육회 정관 1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각 회원단체의 제명 의결시 준용할 필요가 있다.

5) 대법원 1982.7.13. 판결, 80다2441 「이사의 직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양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권리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고, 이사들 상호간에도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없다.」

[조 치 사 항] 시흥시체육회장은

체육회 정관 등 관련 규정의 개정 및 재검토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 각종 사안에 대한 체육회 이사회 및 총회 등 의사 및 의결정족수 등 준수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사회의 ‘위임’ 참석에 관한 제한을 통해 향후 의결사항의 효력에 대한 분쟁 소지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경기도체육회

주의조치

[제 목] 계약 및 회계처리 부적정

[소 속 기 관] 시흥시체육회

[내 용]

1. 업무개요

시흥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서는 「시흥시체육회 회계 규정」(이하 “회계 규정”이라 한다.) 및 「시흥시체육회 위임전결 내규」(이하 “위임전결 내규”라 한다.)에 따라 계약업무와 회계 처리를 하고 있다.

또한 「회계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라 한다.), 동법 시행령을 준용한다고 되어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체육회 「회계 규정」 제34조(계약방법과 준용) 및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경기도 회계관리 규칙”이라 한다.) 제15조(계약의 체결)3항에 의거, 2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훈령 별지 제40호서식, 제40의1호서식, 제41호서식 또는 제41의1호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에서는 계약 담당자가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위임전결 내규에 따라 사업계획부터 자체행사 관련 업무 등 19가지 업무내용에 따라 위임전결을 내규화 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체육회는 국·도비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회계관리를 해야 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견되었다.

가. 계약처리절차 부적정

국·도비 보조금으로 용품구매 등 집행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추정금액 2000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용역을 실시할 경우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확정된 사업계획에서 대상별·시기별·업체별로 분할하여 구매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법령에 명시된 금액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1인견적)을 체결해야 하나 그러하지 않았다.

나. 회계분야 위임전결 운영 부적정

체육회는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 결의 시 「위임전결 내규」에 따라 [표1]과 같이 금액 기준별 전결자의 권한이 다르나 이를 무시하고 회계처리 하고 있었다.

[표1] 시흥시체육회 지출품의 위임전결

구분	'21.08.02.제정	'24.02.26.개정
지출품의	건당 5백만원 초과 회장	건당 5백만원 초과 회장
	건당 5백만원 이하 사무국장	건당 5백 이하 사무국장
지출결의	건당 5백만원 초과 회장	건당 5백만원 초과 회장
	건당 5백만원 이하 사무국장	건당 5백만원 이하 회장

다. 증빙서류 관리 미흡

체육회는 국·도비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나 [표2]와 같이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비교견적서 등을 받지 않았고 폐업한 업체의 비교견적을 받거나 타업체의 견적서를 증빙처리하는 등 지출 증빙에 부실이 발생하였다.

[표2] 증빙서류 관리 미흡 현황

사업명	지출내역	금액	부실 증빙내역
2021 ****	피복비	*,***,000	비교견적(사업자 확인불가)
2023 **** *	수영용품	*,***,000	비교견적(사업자 확인불가)
2023 **** **	트로피	***,600	비교견적(폐업업체)
2021 **** ***	강사비	*,***,000	이체증, 기타소득세 미신고, 품의 누락 등
2021 **** ***	홍보비	*,***,000	비교견적(누락)
2021 **** ***	임차비	*,***,000	사용내역 등 증빙누락
2022 **** ****	시상품(테이핑)	*,***,000	비교견적, 검수조서 금액 불일치 등
2022 **** ****	시상품(족구화,가방)	*,***,000	비교견적 누락, 업체명 상이 등
2022 **** ***	현수막	*,***,900	증빙사진, 비교견적 누락
2022 **** ***	운동용품	*,***,000	증빙 및 검수사진, 비교견적 누락
2022 **** ****	홍보비	***,000	지출품의서 및 결의서 등 일체 미첨부
2023 **** ****	당구용품	*,***,000	비교견적(폐업)
2023 **** ****	트로피	***,600	계좌이체증, 비교견적(폐업)
2023 **** ****	홍보비	***,500	비교견적(누락)
2023 **** ***	임차비	*,***,000	카드영수증 누락

[조치사항] 시흥시체육회장은 (주의)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체육회 회계규정 등을 근거로 청렴한 보조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계약 및 회계처리에 있어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 관리에 철저를 요하며, 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

경기도체육회

개선조치

[제 목] 정관 개정 미흡 및 기타규정 운영 부적정

[소 속 기 관] 시흥시체육회

[내 용]

1. 업무개요

시흥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흥시체육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정관은 스포츠평정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 후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대의원 총회를 통해 의결하고 시흥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체육회 정관 제7조(권리와 의무) 및 제51조(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따르면 체육회는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본회 「시·군체육회 규정」¹⁾에 따라 정관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본회는 시군체육회의 조직운영에 필수요소인 정관 개정을 독려하기 위해 본회 정관 및 제규정 사항에 대해 안내²⁾하여 시군체육회의

1) 경기도체육회 「시군체육회 규정」 제51조(정관의 제정 및 개정) ① 시군체육회는 본회 시군체육회 규정에 따라 정관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2) 경기도체육회 지역진흥팀-853(2023.03.06.) / 지역지원팀-716(2024.03.04.)

정관 및 제규정이 신속하게 개정하고 체육회 운영에 규정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회는 20**년도 *월 정관을 개정한 이후 현재까지 정관에 대한 최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한체육회를 통해 생활체육지도자 관리에 필요한 운영 지침을 안내하면서 운영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안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이사회에서 심의조차 실시 하지 않았다.

또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운영함에 있어 행동강령책임자를 사무국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무감사 등 행동강령책임자가 점검해야되는 업무를 행동강령책임자가 아닌 다른 직원이 점검하는 등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

이처럼 체육회는 정관 및 제규정을 제·개정하고 관리하는 등 규정상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준수하며 운영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조 치 사 항] 시흥시체육회장은

본회 「시·군체육회 규정」 제51조 등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체육회 임직원이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 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주시고 빠른시일내에 정관 및 제규정을 개정한 후 본회 공정감사실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

경기도체육회

개선조치

[제 목]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미흡

[소 속 기 관] 시흥시체육회

[내 용]

1. 업무개요

시흥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시흥시체육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시흥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과 체육인의 인권과 권익보호에 이바지 하며 우수 경기자 양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각종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체육회 「정관」,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각종위원회 규정”이라 한다) 등에 따라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각 위원회는 필요할 시 규정 등을 제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원회는 체육회의 여러 분야에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지만 체육회의 위원회는 스포츠 공정위원회와 인사위원회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각종위원회 규정」제2조(적용범위)에 따르면 학교체육위원회, 생

활체육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시흥시에는 복싱, 당구, 서핑, 테니스와 같이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전문체육의 발전과 우수 경기자의 양성 등의 역할을 하는 경기력향상위원회가 미구성 되어있어 우수한 전문체육 양성을 위한 역할과 기능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인사위원회는 「시흥시체육회 인사위원회 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7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2분의 1이상 위촉하도록 되어있으며 위원장은 임원중 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외부위원이 2분의 1이상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위원회의 주요직책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내부위원으로 구성하게끔 하는 것은 규정에 명시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하기엔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조 치 사 항] 시흥시체육회장은

「정관」, 「각종위원회 규정」 등을 근거로 시종목단체와 임원을 연결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처럼 체육회 각 분야에 체계적인 체육정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본 회 공정감사실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경기도체육회

개선조치

[제 목] 회계재정보증보험 가입 미흡

[소 속 기 관] 시흥시체육회

[내 용]

1. 업무개요

시흥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흥시체육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제규정인 「시흥시체육회 회계 규정」(이하 “회계 규정”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회계법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항은 회계관계 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¹⁾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부여와 그 위반하는 회계 관계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체육회는 「회계 규정」 제6조(회계담당)를 두어,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생략”

2.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3.~4. “생략”

체육회의 회계 및 재산관리에 관한 회계담당을 각 직위별로 지정하고 있고, 동규정 제7조(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에서는 회계관계 직원에 대하여 재정보증없이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고 하여 그 가입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 규정 제23조(수입담당), 제30조(지출담당) 등에 따라 계약업무 및 회계 처리를 운영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체육회는 2019년도 시흥시 감사를 통해 지적된 회계재정보증보험을 지출담당자 1명만 가입한 상태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으며 「회계 규정」 제6조(회계담당)에 회계담당 및 위임 전결권자 등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다.

[조 치 사 항] 시흥시체육회장은

「시흥시체육회 회계규정」에 따라 회계담당의 범위를 수입금출납원, 지출원 등으로 확대하고 현재 가입중인 재정보증보험의 가입대상 확대하기 바랍니다.